

심사보고서

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02
----------	-----

2023. 6. 23.(금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안치영 의원 등 7인

나. 제출일자 : 2023년 5월 31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6월 9일

-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안치영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9조는 출자·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충북여성재단에도 이를 적용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결산 완료 및 결산서 제출 시기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10조)
(당초) 세입·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
(변경)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
-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14조)
(당초) 조례에 → (변경) 조례를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제출배경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9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(2019.12.3.일부개정, 2020.6.4.시행).
- 그러나 현행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」는 세입·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됨.
- 이에 상위법을 적용하여 충북여성재단의 결산 완료 시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10조는 상위법을 적용하여 충북여성재단의 결산 완료 및 결산서 제출 시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법적·내용적으로 타당함.
- 안 제14조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임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충북여성재단의 결산 완료 시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조례 개정을 통해 적기에 결산이 실시함으로써 회계·결산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제1호 중 “조례에”를 “조례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①· ② (생 략)</p> <p>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·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생 략)</p>	<p>제10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①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4조(재단에 대한 제재) 도지사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재정 지원을 중지하거나,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</p> <p>1. 법령 또는 <u>조례</u>에 위반하여 예산을 사용하였을 때</p> <p>2.·3. (생 략)</p>	<p>제14조(재단에 대한 제재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조례</u>를 ----- -----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19조(결산) 출자·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자산총액, 부채규모, 종업원 수,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·출연 기관은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관련법을 반영하여 조문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므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